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연락처

지방노동관서	연락처	지방노동관서	연락처	일선기관명	연락처	일선기관명	연락처
본부(산업보건과)	044)202-7738	부산북부지청	051)309-1552	서울광역본부	02)6711-2827	대구서부지사	053)650-6843
서울청	02)2250-5772	창원지청	055)239-6580	서울북부지사	02)3783-8341	경북지역본부	054)478-8019
서울강남지청	02)584-0009	울산지청	052)228-1889	강원지역본부	033)815-1092	경북동부지사	054)271-2035
서울동부지청	02)2142-8872	양산지청	055)370-0935	강원동부지사	033)820-2523	인천광역본부	032)510-0563
서울서부지청	02)2077-6171	진주시청	055)752-1752	부산광역본부	051)520-0508	경기지역본부	031)259-7262
서울남부지청	02)2639-2271	통영지청	055)650-1949	울산지역본부	052)226-0551	경기북부지사	031)828-1927
서울북부지청	02)950-9831	대구청	053)667-6360	경남지역본부	055)269-0526	경기중부지사	032)680-6532
서울관악지청	02)3282-9053	대구서부지청	053)605-9150	경남동부지사	055)371-7526	경기서부지사	031)481-7535
중부청	032)460-4419	포항지청	054)271-6833	광주광역본부	062)949-8733	경기동부지사	031)785-3318
인천북부지청	032)540-7980	구미지청	054)450-3550	전북지역본부	063)240-8532	대전세종광역본부	042)620-5623
경기지청	031)259-0265	영주시청	054)639-1155	전북서부지사	063)460-3614	충북지역본부	043)230-7139
평택지청	031)646-1184-1189	안동지청	054)851-8037	전남지역본부	061)288-8737	충남지역본부	041)570-3422
부천지청	032)714-8788	광주청	062)975-6331	전남동부지사	061)689-4933	본부 재정사업실	
인양지청	031)463-7351-6	전주시청	063)240-3399	제주지역본부	064)797-7523	특수건강진단	052)703-0764-6
안산지청	031)412-1974	익산시청	063)839-0031	대구광역본부	053)609-0548	직업환경측정	052)703-0768-9
의정부지청	031)850-7641	군산시청	063)450-0530				
고양지청	031)931-2864	목포지청	061)280-0100				
성남지청	031)788-1571	여수지청	061)650-0137				
강원지청	033)269-3581-7	광주청(제주)	064)975-6331				
강릉지청	033)650-2525	대전청	042)480-6307				
원주지청	033)769-0823	청주시청	043)299-1314				
태백지청	033)552-8603	천안지청	041)560-2874				
영월출장소	033)371-6240	충주시청	043)840-4032				
부산청	051)850-6480	보령지청	041)930-6147				
부산동부지청	051)559-6670	서산출장소	041)661-5630				

소규모 사업장 건강 디딤돌 사업

소규모 사업장「건강 디딤돌」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노동자가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20인 미만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 별표21「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보유사업장에 한함
지원 금액	신규 측정 - 최초 측정 비용에 대해 전액 지원 ▶ 최대 100만원 지원 기존 측정 - 측정 비용의 70% 지원 ▶ 최대 40만원 지원

▶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비용지원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20인 미만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 별표 22의「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보유사업장에 한함 - 건설일용직 근로자 - 공동주택의 경비 및 청소원
지원 금액	-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비용 전액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06조 별표 24에 따른 제1.2차 검사항목에 대하여 비용지원

▶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 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 신청·접수 →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찾는항목” ▶ 건강디딤돌
신청 기간	- 수시신청 - 「건강 디딤돌」사업 공고일 이전에 `20년도 측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라 신청을 마감할 경우 홈페이지 별도 공지 예정

▶ 사업 지원 절차

사업주	공단	사업주	측정/특검기관	공단	공단
인터넷 신청 (휴대폰 본인인증)	대상 선정	측정/특검기관에 의뢰하여 측정/검진 실시	① 비용청구 (기관-공단) ② 결과통보 (기관-사업주)	① 청구자료심사 ② 비용지급 (공단-기관) ③ 지급결과확인 안내 SMS 통보 (공단-사업주)	사후관리·모니터링 (공단-사업주)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야간 작업은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가 높아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건강문제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야간작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야간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조기 발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실시 대상(2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실시 시기 및 주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별표 23

- 배치전
 - 배치 후 첫 번째 : 6개월 이내
 - 주기 : 12개월
- * 해당 작업의 근로시간이 상시적으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시간에 포함 되는 경우 해당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건강진단을 실시함
- 배치 후 첫 번째 검진을 받은 날부터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가능
- 야간작업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에 배치된 날로부터 6개월간 근무한 야간작업 시간을 토대로 대상여부를 판단하므로 배치전건강진단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아야하는 직종은 어떻게 되나요?

업종 및 직종에 상관없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되면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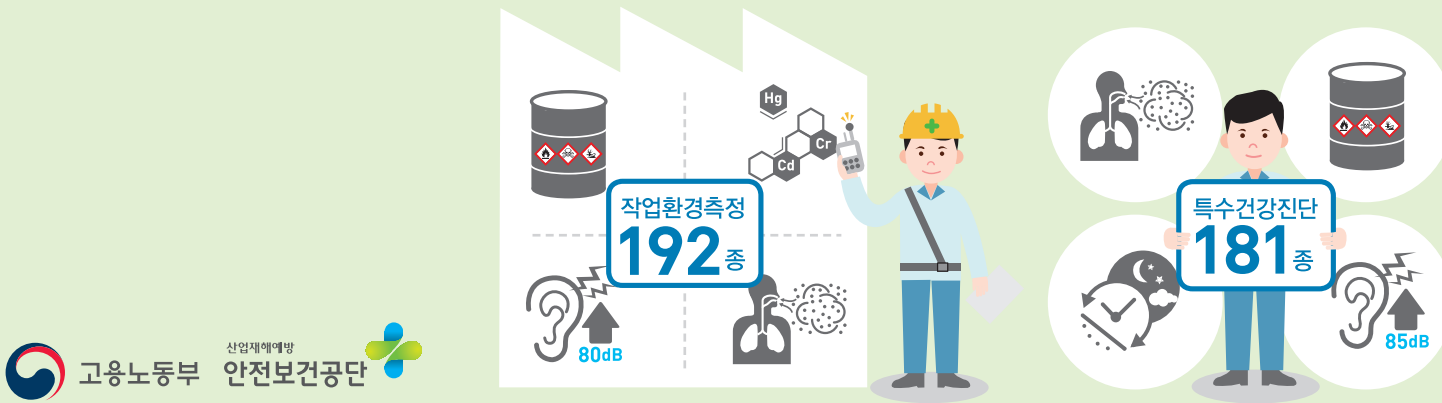
“보통 3~4시간 정도 자는데 중간에 야간 순찰 순번이 있으면 중간에 깨야하고, 간혹 주민들 중에 술에 취한 사람이 문을 두드려서 깨기도 해요”

“야간에 장시간 서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매우 피곤합니다. 불규칙한 식사로 인한 위장질환이 끊이지 않으며, 항상 수면부족에 시달립니다.”

“밤에는 일이 거의 없어도 잠수는 없어요. 중간 중간 어르신들이 부르면 가야하고, 또 기저귀를 간간히 갈아야 해서 자면 안되죠. 수면장애가 있는 환자는 밤새 보살펴야 해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작업시간에 해당 된다면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검진기관의 사후관리조치 의견에 따라 건강관리를 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내가 일하는 작업장에 유해물질이?

우리는 일하면서 다양한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유해환경에 노출됩니다.
도장작업, 용접작업, 배합작업 등에서 유기용제 등의 화학물질을 취급합니다.
절삭, 절단, 연마작업을 하면서 분진이나 소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기용제, 중금속, 분진, 소음 등 유해물질들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안전한 수준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작업현장내 유해물질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당신은 내가 일하는 작업장에
어떤 유해물질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러한 유해물질이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

유해환경에서 일한다면 건강상태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은 냄새나 눈, 귀로 느낄 수 있으나 유해물질에 따라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기용제 중 상당수는 호흡기 뿐만 아니라 피부를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몸 속으로 들어온 유해물질은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 몸을 병들게 합니다.

유해물질에 대한 우리 몸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 근무 재배치,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하면서
어떤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로 인한 나의 건강상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

작업환경측정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내가 일하는 작업장의 환경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 **측정대상 유해인자**

각종 화학물질(유기용제, 금속류, 산·알칼리, 가스, 금속가공유 등)을 취급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소음, 분진, 고열 등이 발생하는 작업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됩니다.

측정대상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192종의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 참조)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나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특수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검진사의 사후관리조치 내용에 따라 건강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실시대상**

작업환경측정과 마찬가지로 각종 유해인자(유기용제, 금속류, 산·알칼리, 가스, 금속가공유 등)에 노출되는 업무나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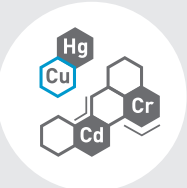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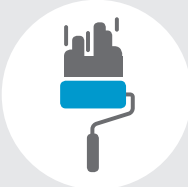
실시대상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181종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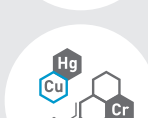
+

다양한 작업과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인자



+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인자



▶ **측정주기**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이후 6개월 주기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실시방법**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확인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의뢰

작업환경측정 실시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

▶ **위반시 벌칙**

-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측정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건강진단 주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배치전건강진단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별로 1~12개월 이내, 이후에는 6~24개월 주기로 실시합니다.

▶ **실시방법**

특수건강진단 대상근로자 선정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의뢰

유해인자별 배치전건강진단 및 주기적인 특수건강진단 실시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조치이행

▶ **위반시 벌칙**

-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결과를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